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3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 박지혜·이소영·임미애

오세희 • 권향엽 • 정진욱

허 영·채현일·이건태

문금주 • 이광희 • 정일영

임광현 · 이병진 · 김영환

윤준병 • 박선원 • 박희승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하고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6조제3항제4호·제7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양이용·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 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온실가스 저감대책 의 적정성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910호	법률 제19910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	제4조(기본원칙)
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	
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
	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
	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u>3.</u> ~ <u>5.</u> (생 략)	$4. \sim 6.$ (현행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
가 분야 및 항목) ①·② (생	가 분야 및 항목)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	③
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해양이용ㆍ개발에 따른 온실
	가스의 배출량과 온실가스 저
	<u>감대책의 적정성</u>

<u>4. · 5.</u> (생 략)

④ (생략)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 전 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 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 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u>5.·6.</u> (현행	제4호	및	제6호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	------	-----

(10) ED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
정)	

---.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
- <u>6.</u> (현행 제5호와 같음)